

# 정 관

##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문서번호 ID NO	KSS-MSD-110	통제문서 CONTROLLED COPY	
개정번호 VERSION NO	<u>5.2</u>	본부/선박 DIVISION/VESSEL	
시행일자 EFFECTIVE DATE	<u>22-MAR-2019</u>	보관철 HOLDER	규정&절차서(총무) Rules&Procedure(GG) / VOL. 2
적용규격 CODE & STANDARD		등록일/담당자 REGISTERED DATE/ P. I. C	

# KSS LINE LTD.

## F-01 목 차 CONTENTS

장 CHAPTER	제목 TITLE	쪽 PAGE	개정번호 VERSION NO	시행일자 EFFECTIVE DATE (dd-mm-yyyy)
F-01	목차 Contents	2	5.2	<u>22-MAR-2019</u>
F-02	제정 & 개정이력/품의서 Revision Status/Proposal	3	5.2	<u>22-MAR-2019</u>
CH-01	총칙 제 1 조 (상호) 제 2 조 (목적)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제 4 조 (광고방법)	1	5.0	17-MAR-2017
CH-02	주식 제 5 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제 6 조 (일주의 금액) 제 7 조 (주식의 종류) 제 8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제 9 조 ( <u>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u> ) 제 10 조 (신주 인수권) 제 11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제 12 조 (명의개서 대리인)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2	5.2	<u>22-MAR-2019</u>
CH-03	사채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제 15 조의 2 ( <u>사채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u> )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1	5.2	<u>22-MAR-2019</u>
CH-04	주주총회 제 17 조 (소집시기) 제 18 조 (소집권자)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제 20 조 (소집지) 제 21 조 (의장)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2	5.2	<u>22-MAR-2019</u>

CH-05	이사, 이사회 제 29 조 (이사의 수) 제 30 조 (이사의 선임) 제 31 조 (이사의 임기) 제 32 조 (이사의 보선) 제 33 조 (대표이사 사장의 선임) 제 33 조의2 (이사의 직명부여) 제 34 조 (상임이사의 직무) 제 35 조 (이사회에 권한과 소집) 제 36 조 (이사회에 결의방법) 제 37 조 (이사회에 의사록) 제 38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 39 조 (회장 및 고문)	2	5.2	<u>22-MAR-2019</u>
CH-06	감사위원회 제 40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제 41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제 41 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제 42 조 (감사위원회의 감사록)	1	5.2	<u>22-MAR-2019</u>
CH-07	계산 제 43조 (사업년도) 제 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제 45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제 46조 (성과공유제의 운영) 제 47조 (이익금의 처분) 제 48조 (이익배당) 제 49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5.2	<u>22-MAR-2019</u>
CH-08	보칙 제 50조 (비상사태의 경우 회사 운영)	1	5.2	<u>22-MAR-2019</u>
CH-09	부칙 제 1 조 (시행일) 제 2 조 (개정이력)	1	5.2	<u>22-MAR-2019</u>

## F-02 제정 및 개정이력 Revision Status

개정 번호	개정 항목	승인일자 dd-mmm-yyyy	시행일자 dd-mmm-yyyy	개정내용
1.0			27-JUN-1984	▶ 정관을 제정함.
1.1 - 2.6				▶ 제8장 부칙 제2조 개정이력 참조
2.7			18-MAR-2011	▶ 상장회사 표준정관의 내용중 당사가 반영해야할 사항 적용하여 개정함. ◆ 제30조 이사의 수 : 이사와 사외이사 구분 ◆ 제33조 이사의 보선 : 제30조의 개정으로 사외이사 내용 추가 ◆ 제42조 감사의 수와 선임 : 상근감사를 구체적으로 표기 ◆ 제50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 인터넷홈페이지(전자적공고방법) 게재내용 추가 ◆ 제8장 부칙의 시행일 변경 및 개정이력 추가
3.0			23-MAR-2012	▶ 문서양식을 한글에서 MS워드로 전면 개정함. ▶ 제28기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함. ◆ 제10조(신주인수권)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배정시 통지/공고 의무 신설 ◆ 제34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대표이사 선임 방법 변경 ◆ 제34조의2(이사의 직명부여) 제34조 개정에 따라 변경전 정관 제34조의 내용을 옮겨옴 ◆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변경전 정관 제38조의 오기내용을 반영 ◆ 제37조(이사회)의 결의 방법) 이사회 의결 요건 강화 및 대표이사 사장 직무정지에 관한 내용 신설 ◆ 제40조(회장 및 고문) : 상담역 제외 및 회장 추가 ◆ 제44조(감사의 직무) :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 명시 ◆ 제48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등)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권 추가 ◆ 제36조(집행임원) 및 제52조(주식의 소각) : 삭제 ◆ 제36조 ~ 제50조 : 1조씩 재배열 ◆ 제51조 ~ 제52조 : 2조씩 재배열 ◆ 제8장 부칙의 시행일 변경 및 개정이력 추가
4.0			18-MAR-2016	▶ 문서내용을 한자에서 한글로 전면 개정함. ▶ 제32기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함.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에 따른 변동 사항 반영함.

5.0			17-MAR-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서번호 변경 KSS-GD-110 → KSS-MSD-110</li> <li>▶ 제33기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함.</li> <li>◆ 제4조(공고방법) : 전자적 공고방법으로 변경</li> <li>◆ 제31조(이사의 선임) :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에 한해서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 내용을 신설</li> <li>◆ 제32조(이사의 임기) 대표권과 이사권리 일체형 근거 신설</li> <li>◆ 제33조(이사의 보선), 제34조(대표이사 사장의 선임), 제34조의2(이사의 직명부여) : 문구 수정</li> <li>◆ 제35조(상임이사의 직무) : 이사명칭 구분</li> <li>◆ 제36조(이사회회 권한과 소집) TWO TOP제도 도입 및 사외이사끼리 의장 선임</li> <li>◆ 제37조(이사회회 결의방법) : 문구 수정</li> <li>◆ 제4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감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감사파트로 재분류 신설</li> <li>◆ 제50조(비상사태의 경우 회사 운영) 유사시 경영지휘권 대행조직운영 신설</li> <li>◆ 제9장 부칙의 시행일 변경 및 개정이력 추가</li> </ul>
5.1			23-MAR-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4기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함.</li> <li>◆ 제32조(이사의 임기)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의 재임기간 제한 내용을 신설. 대표이사 연령제한 신설. 불명예 사유로 중도퇴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위상실 및 새로운 취임이 불가하도록 수정.</li> <li>◆ 제47조(이익공유제의 운영) 제31기 주주총회의에서 승인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내용을 신설</li> <li>◆ 제47조 ~ 제50조 : 1조씩 재배열</li> <li>◆ 제49조(이익배당) 임직원에 대한 배당총액 설정 삽입</li> <li>◆ 제9장 부칙의 시행일 변경 및 개정이력 추가</li> </ul>
5.2			22-MAR-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제35기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함.</u></li> <li>◆ <u>제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u> <u>상장사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한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라 조명칭 변경 및 내용 변경</u></li> <li>◆ <u>제12조(명의개서대리인)</u> <u>주식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u></li> <li>◆ <u>제13조(삭제)</u> <u>주식이 전자등록 될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주등의 제반정보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u></li> <li>◆ <u>제13조 삭제로 1조씩 재배열("이하 동일")</u></li> <li>◆ <u>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u> <u>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 변경</u></li> </ul>

<p>5.2</p>			<p>22-MAR-20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u> 상장사의 경우 발행하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근거신설</li> <li>◆ <u>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u> 제13조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li> <li>◆ <u>제17조(소집시기)</u>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 변경</li> <li>◆ <u>제18조(소집권자)</u> 제13조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li> <li>◆ <u>제21조(의장)</u>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 주총회 의장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원칙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li> <li>◆ <u>제29조(이사의 수)</u>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구 반영</li> <li>◆ <u>제31조(이사의 임기)</u> - 임기 총량제 도입 - 사외이사 연령제한 만68세 신설</li> <li>◆ <u>제36조(이사회회의 결의방법)</u> 이사회 참석방법 일부강화</li> <li>◆ <u>제40조(감사위원회의 구성)</u>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구 조정</li> <li>◆ <u>제41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u> 개정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의 변경 내용을 반영</li> <li>◆ <u>제45조(외부감사인의 선임)</u> 개정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선정권 변경 내용을 반영</li> <li>◆ <u>제46조(성과공유제의 운영)</u> 용어 변경 및 문구 수정</li> <li>◆ <u>제48조(이익배당)</u> 자사주와 같은 현물배당을 추가</li> <li>◆ <u>부칙 제1조(시행일)</u>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효력 발생되도록 정함</li> </ul>
------------	--	--	--------------------	---

## CH-01 총칙

### 제 1 조 (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 해운이라 칭한다.  
약호로는 (주) K S S 해운으로 표기한다.  
영문으로는 KSS LINE LTD.로 표기한다.

###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운업
2. 육상 운송업
3. 무역, 유통 및 창고업
4. 부동산업
5. 국내외 관광관련 사업
6. 발전사업
7. 기타 필요 또는 유익한 업종에 대한 투자
8. 위 각호에 부대한 사업일체

###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 4 조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sslin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 한다.

## CH-02 주식

### 제 5 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

### 제 6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 제 7 조 (주식의 종류)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제 8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오백오십만주이내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6%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아니할 수 있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3년이상 10년이내의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결정하며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 10 조 (신주 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①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간접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외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②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④ 제②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제 11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12 조 (명의개서 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은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 ③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3 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 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CH-03 사채

##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간접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외 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 ①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간접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외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5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2 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CH-04 주주총회

### 제 17 조 (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 18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 34 조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 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①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 20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 21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 34 조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①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CH-05 이사, 이사회

## 제 29조 (이사의 수)

- ① 회사의 이사는 5인 이상으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되,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①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 30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회사는 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사내이사(대표이사 사장은 제외한다)와 사외이사 별로 사내이사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내이사추천위원회 규정 및 사외이사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③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의 방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 제 31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임기는 통산 9년, 사외이사의 임기는 통산 12년을 넘을 수 없다.
- ③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만 65세, 사외이사는 만 68세가 되는 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하는 때에 임기가 종결된다.
- ④ 대표이사사장이 해임, 사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지위도 상실되며, 불명예 사유로 퇴임하는 경우 그 어떤 직무에도 새로이 취임할 수 없다.

## 제 32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 한다. 그러나 정관 제 29조에 정하는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33조 (대표이사 사장의 선임)

- 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한다.
- ② 회사는 대표이사 사장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사장추천위원회를 둔다.
- ③ 대표이사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전임사장(현재의 사장이 연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현재의 사장), 사외이사 및 외부인사 약간명을 포함한 5~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임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대표이사사장추천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 제 33조의 2 (이사의 직명부여)

이사회는 사내이사의 업무 분장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에게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의 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 제 34조 (상임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기타 사내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 순서로 그 직무를 행한다.

## 제 35조 (이사회회의 권한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의장이 회의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그 소집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이사회 결의가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은 결정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36 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항과 대표이사 사장 직무정지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 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단, 인사, 회사 재산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은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7 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8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9 조 (회장 및 고문)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 회장 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CH-06 감사위원회

## 제 40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⑤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41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제①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⑦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 ⑧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제 41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2 조 (감사위원회의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CH-07 계산

## 제 43 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44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일 전까지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①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⑤ 제④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①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 ①, ②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는 제 ①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④항에 의한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5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6 조 (성과공유제의 운영)

회사는 이익이 창출되면 그 이익의 일부를 이익정도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배당하고, 손실이 발생되면 그 손실의 일부에 대하여 임직원들도 함께 책임지는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임직원들의 책임경영과 주인의식을 제고한다. 구체적인 제도의 시행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47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 48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기타의 자산으로 할 수 있다.
-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④ 제②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⑤ 제 47 조의 임직원에 대한 배당 총액은 제②항의 이익의 배당금 총액 미만으로 한다.



제 49 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①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CH-08 보칙**

## 제 50조 (비상사태의 경우 회사 운영)

- ① 전쟁, 테러, 지진 기타 비상사태의 경우 통신두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 또는 본점의 기능이 마비된 때에는, 본점의 기능은 해사본부, 동경사무소, 상해사무소의 순서로 해사본부 또는 사무소가 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사본부 또는 사무소의 장은 회사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이 조치를 취한 해사본부 또는 사무소의 장은 비상사태가 종료하고 이사회 또는 본점의 기능이 정상화한 때에는, 지체없이 비상사태 기간에 수행한 업무의 경과와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관한 해사본부 또는 사무소의 장은 비상사태 기간의 회사 운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이사회를 갈음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④ 비상사태 아래서의 회사의 경영·관리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CH-09 부칙**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 3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9조, 제 12조, 제 15조의 2 및 제 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개정이력)

1984. 6. 27 제정  
1985. 2. 14 개정  
1986. 8. 12 개정  
1987. 3. 27 개정  
1987. 6. 01 개정  
1990. 3. 20 개정  
1991. 3. 20 개정  
1992. 2. 28 개정  
1996. 3. 28 개정  
1998. 3. 20 개정  
1999. 7. 01 개정  
2000. 3. 29 개정  
2002. 2. 27 개정  
2003. 2. 27 개정  
2004. 2. 26 개정  
2007. 2. 28 개정  
2008. 3. 21 개정  
2009. 3. 20 개정  
2010. 3. 31 개정  
2011. 3. 18 개정  
2012. 3. 23 개정  
2016. 3. 18 개정  
2017. 3. 17 개정  
2018. 3. 23 개정  
2019. 3. 22 개정